

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수원시 고시 제2009-109호(2009.4.21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.10.26. 조합설립 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-6번지 일대의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인가(2015.5.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제2018-91호(2018.04.10.),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 제2017-162호(2017.6.16.) 및 제2020-283호(2020.7.27.)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26일

수 원 시 장

-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정비구역의 위치: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-6번지 일원
- 정비구역의 면적: 138,401㎡
-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
 - 명 칭: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병태)
 - 주 소: (기존)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07, 2층
(변경)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85, 제2층 201호
-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(기존)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(변경)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: 2024. 1. 26.
- 기타 관계도서: 생략
 - 수원시청 도시정비과(T: 031-228-2417) 및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T: 031-268-3955)에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소관부서	수원시청 도시정비과	담당자 (직/성명)	주무관 김중수	전화번호	031-228-2417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